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

제출년월일 : '95. 3. 23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이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개정시행('95.2.6)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자제 등에 대한 사업장별 세부실천사항 및 적용대상 1회용품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1회용품 사용자제 범위 확대(안 별표1의 가~다목)
 - 1회용품 사용자제 대상 집단급식소의 규모(종전 66제곱미터이상)를 삭제함
→ 전체 집단급식소가 적용됨
 - 사용자제 대상품목에 합성수지로 도포(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과 이쑤시개를 추가함
- ☐ 1회용품 무상제공억제 대상 숙박업소 확대(안 별표1의 다목)
 - 종전 “객실 30실 이상” 숙박업소에서→“객실 7실 이상” 숙박업소로 변경
- ☐ 1회용품 사용억제 도·소매업종 및 실천사항 확대(안 별표1의 바~사목)
 - 종전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터, 쇼핑센터”에 → 매장면적 200제곱미터이상 영업장을 추가
 - 백화점에서 재활용품 교환, 판매매장을 설치 운영토록함
- ☐ 도시락제조업 1회용품 사용자제 규정을 신설(안 별표1의 아목) - '95. 8. 1이후시행
- ☐ 가정용품 도매업 외 13개업종에서의 합성수지로 도포(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자제 규정 신설(안 별표1의 자목)

3. 관계법령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 ☐ 부산광역시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제1호를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제1호 아목의 개정규정은 199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

(단위 : 천원)

부 과 대 상	부 과 기 준			비 고
	1차	2차	3차	
1. 자원재활용을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자제 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 제5항)				
가.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중 객실과 객실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66제곱미터 미만의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품(이쑤시개는 제외한다)의 사용자제 및 합성수지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품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 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00	2,000	3,000	
나.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중 객실과 객실면적이 66제곱미터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이쑤시개는 제외한다) 사용자제 및 합성수지로 도포(코팅)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품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500	2,500	3,000	
다.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중 객실과 객실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 급식소에서 1회용품중 이쑤시개의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	500	1,000	
라.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억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부 과 대 상	부 과 기 준			비 고
	1차	2차	3차	
(1) 일반목욕장업(공동탕, 가족탕, 한증막)	1,000	2,000	3,000	
(2) 특수목욕장업(사우나탕, 터키탕, 복합목욕탕)	1,500	2,500	3,000	
마.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중 객실이 7실 이상인 숙박업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억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 호텔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콘도미니엄업	1,500	2,500	3,000	
(2) 여관업 및 여인숙업	1,000	2,000	3,000	
바. 도. 소매업진흥법 제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도매센타.쇼핑센타 및 매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에서 1회용품 사용자 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500	2,500	3,000	
사.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에서 재활용제품의 교환, 판매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0	2,500	3,000	
아.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락 제조업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500	2,500	3,000	
자. 통계법의 규정에 의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가정용품도매업, 종합소매업(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타, 쇼핑센타 및 매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은 제외한다)가정용 기기.기구 및 장비소매업, 기타 일반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거래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전문강습소, 일반강습소, 영화제작 및 배급업, 영화상영업, 연극·음악 및 예술관련사업에서 합성수지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00	2,000	3,000	

신 · 구조문 대비표

[별표1]과태료부과기준

(단위 : 천원)

현행				개정(안)			
부과대상	부과기준			부과대상	부과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자원재활용을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자제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15조 제5항) 가.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중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66제곱미터미만의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품의 사용자제에 대한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00	2,000	3,000	1. 자원재활용을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자제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15조 제5항) 가.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중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66제곱미터 미만의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품(이쑤시개는 제외한다)사용자제 및 합성수지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품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00	2,000	3,000
나.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중 객석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500	2,500	3,000	나.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중 객실과 객석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이쑤시개는 제외한다)사용자제 및 합성수지로 도포(코팅)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품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500	2,500	3,000

현행				개정(안)			
부과대상	부과기준			부과대상	부과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신설)				<u>다.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중 객실과 객실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중 이쑤시개의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u>	<u>300</u>	<u>500</u>	<u>1,000</u>
<u>다.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의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u>				<u>라.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의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u>			
(1) 일반목욕장업(공동탕, 가족탕, 한증막)	1,000	2,000	3,000	(1) 일반목욕장업(공동탕, 가족탕, 한증막)	1,000	2,000	3,000
(2) 특수목욕장업(사우나탕·터키탕, 복합목욕탕)	1,500	2,500	3,000	(2) 특수목욕장업(사우나탕·터키탕, 복합목욕탕)	1,500	2,500	3,000
<u>라.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중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업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의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u>				<u>마.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중 객실이 7실 이상인 숙박업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의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u>			
(1) 호텔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콘도미니엄업	1,500	2,500	3,000	(1) 호텔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콘도미니엄업	1,500	2,500	3,000
(2) 여관업 및 여인숙업	1,000	2,000	3,000	(2) 여관업 및 여인숙업	1,000	2,000	3,000

현행				개정(안)			
부과대상	부과기준			부과대상	부과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u>마.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도매센터 및 쇼핑센터에서 1회용품 사용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u>	1,500	2,500	3,000	<u>바.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터, 쇼핑센터 및 매장면적이2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u>	1,500	2,500	3,000
<u>바.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도매센터 및 쇼핑센터에서 화장품류 및 세제류를 판매하는 자가 포장용기 재사용제품을 진열·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용기의 재사용을 위한 협조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u>	2,000	2,500	3,000	<u>사.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에서 재활용제품의 교환, 판매 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u>	2,000	2,500	3,000
<u>사.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에서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 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u>	2,000	2,500	3,000				

현행				개정(안)			
부과대상	부과기준			부과대상	부과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신설)				아. <u>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락제조업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u>	<u>1,500</u>	<u>2,500</u>	<u>3,000</u>
(신설)				자. <u>통계법의 규정에 의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가정용품도매업, 종합소매업(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터, 쇼핑센터 및 매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은 제외한다) 가정용기기·기구 및 장비소매업, 기타 일반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거래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전문강습소, 일반강습소, 영화제작 및 배급업, 영화상영업, 연극·음악 및 예술관련사업에서 합성수지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u>	<u>1,000</u>	<u>2,000</u>	<u>3,000</u>